

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에 의거하여 관련 정관 내용을 변경·신설하고, 공로연수로 인한 결원에 대하여 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조항 신설 및 개정에 따른 명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회의자료 6~19페이지를 참고하여 설명하였음.]
(정관 신규대조문 첨부)

이 사(원중호) : 사립학교법에 의거하여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기에 본 법인 정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 사(참석이사 전원) : 재청합니다.

의장(이사장)김영화 : 이사님의 전원의 동의와 재청이 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 1 안 “법인 정관 변경”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제 2 안 “법인임원(이사 000, 000) 임기만료 보고”에 관한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이사직을 맡아주셨던 000, 000 이사님의 임기가 각각 2021년 11월 10일, 2021년 12월 18일자로 만료되어 임기만료에 대해 보고하고자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회의자료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설명하였음.]

이 사(양재영) : 동의합니다.

이 사(원중호, 이석구) : 재청합니다.

의장(이사장)김영화 : 이사님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참석이사 ‘전원 없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제 2 안 “법인임원(이사 000, 000) 임기만료 보고”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 합니다. 이어서 제 3 안 “법인임원(이사) 선임”에 관한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000 이사님과 000 이사님께서 연임을 승낙하셨습니다. 먼저 000 이사 연임에 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000 이사님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00 이사 퇴장) 000 이사님의 임기가 2021년 11월 10일자로 만료가 도래되어 본 법인 정관 제20조 4항에 의하여 최소 임기 2개월 전에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번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000 이사님께서 앞으로 4년간 본 법인을 위해서 계속 봉사하시겠다고 승낙하셨으니 동의와 재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자료 21~25페이지를 참고하여 설명하였음.]

이 사(원중호) : 이사님 본인의 승낙이 있었고 본 법인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기에 000 이사님의 연임에 동의합니다.

이 사(김용인, 양재영, 이석구) : 재청합니다.

의장(이사장)김영화 : 이사님들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고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000 이사님께서 본 법인 이사로 2021년 11월 11일부터 2025년 11월 10일까지(4년간) 연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000 이사 입장) 다음으로 000 이사 연임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000 이사님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00 이사 퇴장) 000 이사님의 임기가

의장 김영화

이사 원중호

주원규

김용인

양재영

이석구

이 사(참석이사 전원) : 재청합니다.

의장(이사장)김영화 : 주원규 이사님의 폐회 동의와 재청이 있고,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학교법인 세원학
원 제21-03회 이사회를 폐회합니다.

후일을 증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이사님께서서는 회의록을 확인하시고 간서명과 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 : 2021년 9월 8일 오후 6:00)

이사장 김 영화

이 사 원 중 호

이 사 주 원 규

이 사 김 용 인

이 사 양 재 영

이 사 이 석 구

이 사본은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학교법인 세원학원 이사장

직인, 사인

의장 김영화

이사 원중호

주원규

김용인

양재영

이석구

신 · 구 대 조 표

현 행	개 정 (안)
<p>제 21 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 ~ ② (생략) ③ 이사 정수의 1/3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p> <p>(신설)</p> <p>④ ~ ⑥ (생략) ⑦ (생략)</p> <p>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자</p>	<p>제 21 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 정수의 1/3 이상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교육경험 또는 <u>합산 교육경험</u>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p> <p>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4로 정하는 교육경험</p> <p>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p> <p>1) ----- ----- 2) ----- ----- 3) ----- -----</p>
<p>제35조(임용) (개정 16.12.13) ① (생략)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 한다.</p> <p>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u>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제35조(임용) (개정 16.12.13)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다만, 제36조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제7의2호 및 제11호의 휴직 사유에 해당될 경우, 휴직과 복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에게 위임한다.</u></p> <p>③ ----- -----(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 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p>

의장 김영화

이사 원중호

주원규

김용인

양재영

이석구

<p>④ ~ ⑦ (생략) (신설)</p>	<p><u>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u>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u>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 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p>
<p>제 35 조의 5 (명예퇴직) ① <u>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 할 수 있다. 단. 명예퇴직 신청 및 명예퇴직 수당 지급은 경기도교육청 지침을 적용한다.</u> (신설)</p>	<p>제 35 조의 5 (명예퇴직) ① ----- <u>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 ② <u>제1항의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단 명예퇴직 수당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u></p>
<p>제35조의 8(<u>의원면직의 제한</u>) ① <u>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u> 1) <u>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u> 2) <u>제51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u> 3) <u>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u> 4) <u>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u> ② <u>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u></p>	<p>제35조의 8(<u>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u>) ① <u>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u> 1) <u>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u> 2) <u>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u> ② <u>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제51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u> ③ <u>제51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u> ④ <u>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u></p>

의장 김영화

이사 원중호

주원규

김용인

양재영

이석구

	<p><u>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u></p> <p>1) <u>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u></p> <p>2) <u>제51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u></p> <p>3) <u>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u></p> <p>4) <u>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u></p> <p>⑤ <u>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다.</u></p>
<p>제 36 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u>1에</u>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의2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p> <p>1) <u>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u>의 휴양을 요할 때</p> <p>2) ~ 4) (생략)</p> <p>5)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u>하게 된 때, 또는</u>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p> <p>6) 국제 기구, 외국 기관 <u>또는 재외 국민 교육기관에</u> 고용된 때</p> <p>7) ~ 12) (생략)</p> <p>13) <u>기타 사유</u> (신설)</p>	<p>제 36 조 (휴직의 사유) ① ----- <u>어느 하나</u>에 -----</p> <p>-----</p> <p>-----</p> <p>-----</p> <p>-----</p> <p>-----</p> <p>1) -----<u>요양이 필요한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u></p> <p>2) ~ 4) (현행과 같음)</p> <p>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u>하거나</u>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u>또는 연수를</u> 하게 된 때</p> <p>6) 국제기구, 외국기관, <u>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u>-----</p> <p>7) ~ 12) (현행과 같음)</p> <p>13) <u>삭제</u></p> <p>② <u>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u></p>

의장 김영화

이사 원중호

주원규

김용인

양재영

이석구

<p>제 37 조 (휴직의 기간) <u>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u></p> <p>1) <u>제 36 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치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u></p> <p>2) <u>제 36 조 제 2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만료된 때까지로 한다.</u></p> <p>3) <u>제 36 조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u></p> <p>4) <u>제 36 조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u></p> <p>5) <u>제 36 조 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 기간으로 한다.</u></p> <p>6) <u>제 36 조 제 7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u></p> <p>6의2) <u>제 36 조 제 7의2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u></p> <p>7) <u>제 36 조 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u></p> <p>8) <u>제 36 조 제9호,제10호,제11호의 휴직기간은 기간이 만료된 때까지로 한다.</u></p> <p>9) <u>제 36조 제 12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u></p>	<p><u>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을 적용한다.</u></p> <p>제 37 조 (휴직의 기간) ① <u>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u></p> <p>1) <u>제36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u>----- <u>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u></p> <p>2) <u>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u>----- -----.</p> <p>3) <u>제36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u></p> <p>4) <u>제36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u>----- ----- <u>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u></p> <p>5) <u>제36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u>----- -----.</p> <p>6) <u>제36조제1항제7호의</u>----- -----.</p> <p>6의2) <u>제36조제1항제7의2호의</u> ----- ----- --.</p> <p>7) <u>제36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u>----- <u>3년</u> -----.</p> <p>8) <u>제36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인한</u> ----- <u>1년</u> <u>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u></p> <p>9) <u>제36조제1항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u> <u>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u></p>
<p>(신설)</p>	<p>10) <u>제36조제1항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u></p> <p>11) <u>제36조제1항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u> <u>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u></p> <p>② <u>제1항제6호 또는 제9호에 따라 2년 이상 휴</u></p>

의장 김영화

이사 원중호

주원규

김용인

양재영

이석구

	<u>직한 교원은 복직하려면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 3항을 준용하여 연수를 받아야 한다.</u>
제 38 조 (휴직 교원의 신분) ① ~ ② (생략) ③ <u>제 36 조 제 3 호</u>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 38 조 (휴직 교원의 신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36조제1항제3호</u> ----- ----- -----.
제 39 조 (휴직 교원의 처우) ① <u>제 36 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u> ② <u>제 36 조 제 2 호 내지 제 4 호와 제 6 호 내지 제 8 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u>	제 39 조 (휴직 교원의 처우) <u>제36조에 따라 휴직한 교원에게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한다.</u> ① 삭제 ② 삭제
제 40 조 (직위 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1) ~ 2) (생략)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u>대통령령</u> 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③ (생략) ④ <u>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 한다. 다만, 제 1 항 또는 제 2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u> ⑤ ~ ⑥ (생략) ⑦ <u>제 2 항 제 1 호와 제 2 호 또는 제 1 항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 2 항 제 2 호와 또는 제 1 항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u>	제 40 조 (직위 해제 및 해임) ① ----- <u>(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u> 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u>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5</u> ----- ----- ----- ③ (현행과 같음) ④ <u>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u> <u>1) 제2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 봉급의 8할</u> <u>2) 제1항 또는 제2항제2호·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 봉급의 5할. 직위해제 일로부터 3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할을 지급한다.</u>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u>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 · 제3호</u> ----- <u>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 · 제3호를 사유로</u> -----.

의장 김영화

이사 원중호

주원규

김용인

양재영

이석구

<p>⑧ (생략)</p> <p>(신설)</p>	<p>⑧ (현행과 같음)</p> <p><u>제 40 조의 2 (면직의 사유)</u></p> <p>① <u>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u></p> <p>1) <u>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u></p> <p>2) <u>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할 때</u></p> <p>3) <u>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幫助)하였을 때</u></p> <p>4) <u>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하였을 때</u></p> <p>5) <u>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하였을 때</u></p> <p>6)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u></p> <p>② <u>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u></p>
<p>제 51 조 (교원 징계위원회의 조직)</p> <p>(신설)</p> <p>① ~ ② (생략)</p> <p>③ (생략)</p> <p>1) <u>제2항제2호</u>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1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p> <p>2) ~ 3) (생략)</p>	<p>제 51 조 (교원 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u>사립학교의 징계사건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u></p> <p>② ~ ③ (현행 제1항부터 제2항까지와 같음)</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1) <u>제3항제2호</u>-----</p> <p>-----</p> <p>-----</p> <p>2) ~ 3) (현행과 같음)</p>
<p>제 53 조 (징계 의결의 기한)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u>60일 이내</u>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p>	<p>제 53 조 (징계 의결의 기한) ① -----</p> <p>-----</p> <p>---<u>60일</u>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u>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u>-----</p>

의장 김영화

이사 원중호

주원규

김용인

양재영

이석구

<p><u>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u></p>	<p><u>학교법 제64조에 따른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u></p>
<p>제 75 조 (임용) ① ~ ③ (생략) (신설)</p>	<p>제 75 조 (임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일반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되, 신규임용의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u> <u>⑤ 기타 일반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업무 처리지침에 의한다.</u></p>
<p>제 75조의 4 (공로연수) ① ~ ② (생략) (신설)</p>	<p>제 75조의 4 (공로연수)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제1항에 따라 일반직원이 공로연수하게 된 경우 관련 법령(지방공무원법 제41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과 지침(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단, 공로연수로 인한 별도의 정원은 공로연수가 퇴직할 때까지로 한다.</u></p>
<p>제 78 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u>지방공무원임용령</u>을 준용하여 적용한다.</p>	<p>제 78 조 (신분보장) ①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u>② 일반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4에 따른다.</u></p>
<p>제 79 조 (징계 및 재심 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u>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u>을 준용하여 적용하되,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생략)</p>	<p>제 79 조 (징계 및 재심 청구) ① ----- <u>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u> ----- ----- <u>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u> ----- ② (현행과 같음)</p>

학교법인 세원학원

의장 김영화

이사 원중호

주원규

김용인

양재영

이석구